통합서비스이용약관 개정안내

1. 조각거래소 명칭 변경

개정이유 : 조각거래소 명칭이 조각거래로 변경되었습니다.

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(20.11.16)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1. 서비스 : 회원이 전자적 시스템에 접속하여 물품 및 아트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, 약관 제 5 조에 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2. 사이트 : 회사가 서비스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합니다.(* 사이트의 주소 : www.weshareart.com) 3. 회원 :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 체결 후, 실명인증 및 가상계좌 생성 절차를 거친 자를 말합니다. 4. 아이디(ID) :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 5. 비밀번호(PASSWORD) :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 6. 물품 : 미술품와 같이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통하여 제작한 결과물로서 사이트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제공된 작품을 의미합니다. 7. 아트상품 : 물품이나 기타 예술가들의 작품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사용의 허락 하에 동일 유사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. 8. 위탁자 : 본인의 물품을 회사의 공동구매 또는 경매 등의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고자 회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 9. 물품소유자 :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유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, 물품에 대하여 각자의 비율에 따른	제 2 조 (용어의 정의)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1. 서비스 : 회원이 전자적 시스템에 접속하여 물품 및 아트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, 약관 제 5 조에 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2. 사이트 : 회사가 서비스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합니다.(* 사이트의 주소 : www.weshareart.com) 3. 회원 :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 체결 후, 실명인증 및 가상계좌 생성 절차를 거친 자를 말합니다. 4. 아이디(ID) :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 5. 비밀번호(PASSWORD) :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 6. 물품 : 미술품와 같이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통하여 제작한 결과물로서 사이트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제공된 작품을 의미합니다. 7. 아트상품 : 물품이나 기타 예술가들의 작품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사용의 허락 하에 동일 유사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. 8. 위탁자 : 본인의 물품을 회사의 공동구매 또는 경매 등의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고자 회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 9. 물품소유자 :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유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, 물품에 대하여 각자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10. 렌탈 : 회사가 물품소유자의 물품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11. 렌탈이용자 : 렌탈이용자는 물품을 전시공간에 전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렌탈하는 주체를 말합니다.	10. 렌탈 : 회사가 물품소유자의 물품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 11. 렌탈이용자 : 렌탈이용자는 물품을 전시공간에 전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렌탈하는 주체를 말합니다.

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(20.11.16)
제 5 조 (서비스의 제공)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1. 공동구매 서비스 : 회사는 직접 선정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물품을 사이트에 소개하고 회원은 이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해당 물품의 공동소유(공유)할 수 있습니다. 2. 경매 서비스 : 회원은 특정 물품의 응찰 경쟁을 통하여 최고가 응찰자(낙찰자)가 되어 물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3. 렌탈 서비스 : 회사는 공동구매가 완료된 물품을 지정된 전시 공간에 수수료를 받고 정해진 기간까지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회원은 물품에 대한 각자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, 전시되어 있는 물품을 관람할 수 있고, 회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여 회원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4. 조각거래소 서비스 : 회원은 조각거래소를 통해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. 5. 아트몰 서비스 : 위 1 호 내지 4 호의 서비스들과는 별도로 아트상품에 대한 판매를 통하여 회원이 쉽게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6. 기타 서비스 : 그 외에도 회사는 물품소유자가 해당 물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, 물품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른 위탁판매 및 그에 따른 수익분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	제 5 조 (서비스의 제공)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1. 공동구매 서비스 : 회사는 직접 선정하거나 판매를 위탁 받은 물품을 사이트에 소개하고 회원은 이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해당 물품의 공동소유(공유)할 수 있습니다. 2. 경매 서비스 : 회원은 특정 물품의 응찰 경쟁을 통하여 최고가 응찰자(낙찰자)가 되어 물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3. 렌탈 서비스 : 회사는 공동구매가 완료된 물품을 지정된 전시 공간에 수수료를 받고 정해진 기간까지 임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회원은 물품에 대한 각자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, 전시되어 있는 물품을 관람할 수 있고, 회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여 회원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4. 조각거래 서비스 : 회원은 조각거래를 통해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. 5. 아트몰 서비스 : 위 1 호 내지 4 호의 서비스들과는 별도로 아트상품에 대한 판매를 통하여 회원이 쉽게 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6. 기타 서비스 : 그 외에도 회사는 물품소유자가 해당 물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, 물품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른 위탁판매 및 그에 따른 수익분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(20.11.16)
제 11 조 (회사에 대한 관리위탁) ①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소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. 1. 정부기관, 호텔, 백화점 등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렌탈이용자와 미술품 전시계약의 체결 2.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 3. 물품의 처분 4. 위 각 호를 위한 부수절차 및 그에 대한 대리권 ②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소유한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물품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각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정해진 기한동안 물품 매각에 대한 투표자의 동의가 50%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물품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. 다만,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물품소유자들은 회사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③ 물품소유자는 사이트에서 직접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구매금액 모집 단계에서부터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물품의 경우,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보관기간 종료 후 회사가 물품의 매각을 시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④ 취급하는 물품 거래의 특성상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이미 매각 시도를 동의 받은 물품들에 대해 각 매각 대상과 방법 등 세부 조건이 정해졌을 경우,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며, 회사의 회원들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목적 하에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. ⑤ 회사는 물품을 매각한 금액에서 사전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금을 회원의 소유권 수에 따라 배분하며, 회원은 물품의 판매금액 및 수익률 등 수익내용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	제 11 조 (회사에 대한 관리위탁) ①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. 1. 정부기관, 호텔, 백화점 등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렌탈이용자와 미술품 전시계약의 체결 2.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 3. 물품의 처분 4. 위 각 호를 위한 부수절차 및 그에 대한 대리권 ②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소유한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물품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각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정해진 기한동안 물품 매각에 대한 투표자의 동의가 50%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물품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. 다만,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물품소유자들은 회사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③ 물품소유자는 사이트에서 직접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구매금액 모집 단계에서부터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물품의 경우,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보관기간 종료 후 회사가 물품의 매각을 시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④ 취급하는 물품 거래의 특성상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이미 매각 시도를 동의 받은 물품들에 대해 각 매각 대상과 방법 등 세부 조건이 정해졌을 경우,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며, 회사의 회원들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목적 하에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. ⑤ 회사는 물품을 매각한 금액에서 사전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금을 회원의 소유권 수에 따라 배분하며, 회원은 물품의 판매금액 및 수익률 등 수익내용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(20.11.16)
제 14 조 (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및 제세금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1. 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: 각 물품소유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 되면, 회사는 물품금액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·수취합니다. 2. 매각 플랫폼이용료 : 회사는 각 물품의 처분 시, 공동구매로 인한 구입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·수취합니다 (조각거래소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한 물품소유자에 대한 플랫폼이용료도, 해당 물품이 처음 공동구매로 구입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). ②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, 물품소유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.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 항목을 신설하거나, 플랫폼이용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플랫폼이용료율,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사이트의 <공지사항> 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④ 플랫폼이용료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	제 14 조 (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및 제세금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1. 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: 각 물품소유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 되면, 회사는 물품금액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·수취합니다. 2. 매각 플랫폼이용료 : 회사는 각 물품의 처분 시, 공동구매로 인한 구입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·수취합니다 (조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한 물품소유자에 대한 플랫폼이용료도, 해당 물품이 처음 공동구매로 구입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). ②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, 물품소유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.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 항목을 신설하거나, 플랫폼이용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플랫폼이용료율,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사이트의 <공지사항> 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④ 플랫폼이용료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(20.11.16)
제 22 조 (렌탈 서비스의 내용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통하여 구입이 완료된 물품에 관하여 물품소유자들에게 권리를 위임 받아 별도 렌탈이용자와 물품을 유료 또는 무료로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②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로 구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한해서만 렌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 ③ 렌탈이용자와 회사가 유료로 렌탈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며, 이 경우 회사는 발생한	제 22 조 (렌탈 서비스의 내용)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통하여 구입이 완료된 물품에 관하여 물품소유자들에게 권리를 위임 받아 별도 렌탈이용자와 물품을 유료 또는 무료로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②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로 구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한해서만 렌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 ③ 렌탈이용자와 회사가 유료로 렌탈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며, 이 경우 회사는 발생한

수익 중 회사의 플랫폼이용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.	수익 중 회사의 플랫폼이용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.

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(20.11.16)
제 27 조 (조각거래소 서비스 플랫폼이용료) ① 회사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합니다. ② 제 1 항의 플랫폼이용료에는 물품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련한 제반 비용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를 신설, 변경할 수 있으며, 신설 또는 변경된 플랫폼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<공지사항> 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변경된 플랫폼이용료는 공지 후 7 일이 지난 후에 거래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. ④ 플랫폼이용료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	제 27 조 (조각거래 서비스 플랫폼이용료) ① 회사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합니다. ② 제 1 항의 플랫폼이용료에는 물품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련한 제반 비용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를 신설, 변경할 수 있으며, 신설 또는 변경된 플랫폼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<공지사항> 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변경된 플랫폼이용료는 공지 후 7 일이 지난 후에 거래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. ④ 플랫폼이용료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(20.11.16)
제 28 조 (조각거래소 이용 관련 유의사항) ① 회사는 미체결 주문 수 과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제출된 주문을 거부하거나 거래 금액 및 기타 거래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. ② 회원이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은 체결되기 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,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문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③ 소유권에 대한 거래소 내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④ 조각거래소의 서비스 수수료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된 정책은 체결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체결 전의 주문에 대해서도 변경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됩니다.	제 28 조 (조각거래 이용 관련 유의사항) ① 회사는 미체결 주문 수 과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제출된 주문을 거부하거나 거래 금액 및 기타 거래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. ② 회원이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은 체결되기 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,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문을 별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③ 조각거래 시 소유권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④ 조각거래의 서비스 수수료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된 정책은 체결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체결 전의 주문에 대해서도 변경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됩니다.

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(20.11.16)
제 29 조 (조각거래소 물품의 귀속) ① 물품소유자는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유합니다. ② 물품소유자가 보유 중인 각자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은 회사의 사이트 상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. ③ 물품소유자가 등록한 물품의 소유권 및 소유권 비율의 양도를 위한 점유의 이전은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품소유자가 회사에 가지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이전됩니다. ④ 소유권의 비율을 사이트 내에서 거래하면 회사가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시점(회사가 등록한 물품에 대하여 보관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점유개정을 확인하는 시점)에 약정한 비율의 소유권이 물품소유자로부터 구매대기 회원에게 이전됩니다. ⑤ 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분배합니다.	제 29 조 (조각거래 물품의 귀속) ① 물품소유자는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유합니다. ② 물품소유자가 보유 중인 각자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은 회사의 사이트 상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. ③ 물품소유자가 등록한 물품의 소유권 및 소유권 비율의 양도를 위한 점유의 이전은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품소유자가 회사에 가지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이전됩니다. ④ 소유권의 비율을 사이트 내에서 거래하면 회사가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시점(회사가 등록한 물품에 대하여 보관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점유개정을 확인하는 시점)에 약정한 비율의 소유권이 물품소유자로부터 구매대기 회원에게 이전됩니다. ⑤ 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분배합니다.

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(20.11.16)
제 30 조 (조각거래소 서비스 수수료) ① 회사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 ② 제 1 항의 서비스 수수료에는 물품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련한 제반 비용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, 변경할 수 있으며, 신설 또는 변경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<공지사항>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변경된 수수료는 공지 후 7 일이 지난 후에 거래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. ⑤ 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분배합니다.	제 30 조 (조각거래 서비스 수수료) ① 회사는 조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 ② 제 1 항의 서비스 수수료에는 물품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련한 제반 비용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, 변경할 수 있으며, 신설 또는 변경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<공지사항>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. 변경된 수수료는 공지 후 7 일이 지난 후에 거래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. ⑤ 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분배합니다.